
[의료법인]

**‘부대사업 목적 자법인’
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**

2014. 6



보건복지부

순 서

I. 가이드라인 개요	1
1.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배경	2
2. 의료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세법상 통제	3
3. 자법인 설립 절차 개요	4
II.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	5
1. 자격 및 의무	6
2. 자법인 설립 절차	7
가.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	7
나. 의료법인의 정관변경	9
다.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(비과세 요건)	11
라. 자법인 설립	14
3. 의료법인 지도 감독	15
III. 참고자료	16
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성실공익법인 요건	17
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요건	24
3. 의료법인 표준정관(안)	26
4. 자법인 설립계획서	38
IV. Q & A	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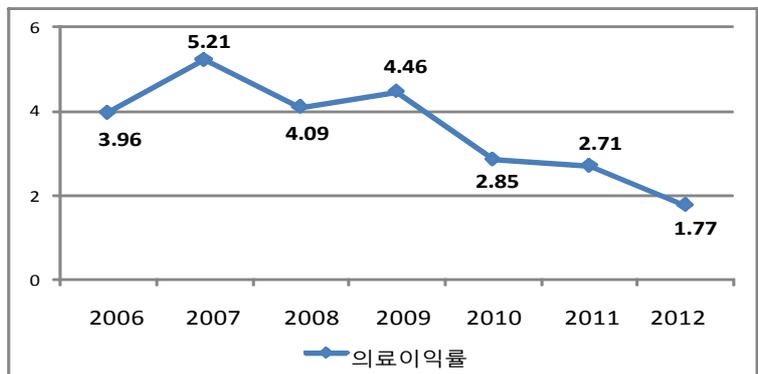
1. 가이드라인 개요

1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배경

- 의료기술의 발전, 우수한 의료인력의 진출, 의료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필요성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필요
 - 경영효율성·투명성 제고, 자금조달,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 진출 등 적극적 활동 지원 필요성 증가
-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, 수익사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
 - 학교법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유사업인 학교운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대비
-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, 창출된 수익을 의료업에 재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
 -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의료업 수행 여건이 지속 악화, 과거와 같이 의료업에만 충실하여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

<의료법인 300병상 이하 중소 종합병원 의료이익률('12년)>

구분	의료이익률(%)
2006	3.96
2007	5.21
2008	4.09
2009	4.46
2010	2.85
2011	2.71
2012	1.77



* 자료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※ 의료이익률 : 의료이익 ÷ 의료수익

- 의료수익 : 입원, 외래 등 진료비 수익

- 의료이익 : 의료수익 - 의료비용(인건비, 재료비, 관리운영비)

2 의료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세법상 통제

□ 공익법인의 의무 및 주식 보유 제한

○ 의료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상증법)」상 공익법인에 포함

-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·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,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부과

▶ 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**의결권** 주식을 **5% 이상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%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·증여세 과세**

□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특례

○ 공익법인 중에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% 이상 재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상증법상 '성실공익법인'에 해당

▶ 성실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**의결권** 주식을 **10% 이상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10%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·증여세 과세**

▶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**주무장관(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)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의결권 주식 100%까지 비과세 취득 가능**

3 자법인 설립 절차 개요

-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것
 -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의 80%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,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-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(시·도지사 허가)
 -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·도지사 허가 필요

- 복지부장관 허가 (비과세 요건)
 -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% 이상 취득시 비과세 취득 가능

- 자법인 설립
 -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(특별법)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

II.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 자격 및 의무

□ 자격요건

- 의료법인이면서 **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**(상증법 제16조제2항)이어야 함

※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 (상증령 제12조제4호)

◇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(상증법 §48②, 상증령 §37⑤)

- 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%까지 비과세되고
- ② 주무장관(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)의 허가가 있을 경우, 의결권 있는 주식 100%까지 비과세 취득 가능
- ③ 다만,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자산총액 5조원 이상)과 특수관계이거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미적용

□ 서류제출 의무

- 성실공익법인은 **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** 결산에 관한 서류 및 「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」를 **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**에 제출하여야 함 (상증령 제41조)

2 자법인 설립 절차

- ①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
- ② 의료법인의 정관변경
- ③ 복지부장관 허가 (비과세 요건)
- ④ 자법인 설립

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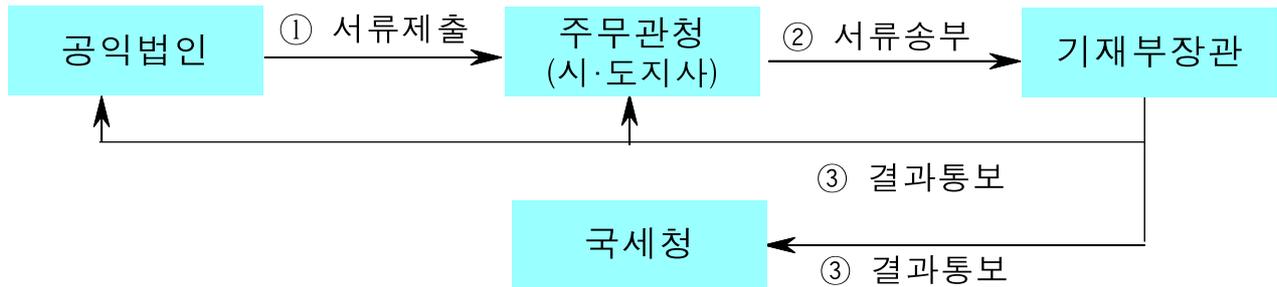
□ 성실공익법인 요건

- 공익법인 중 상증법상 다음의 요건(①~⑧)을 모두 충족한 법인
(상증법 제16조제2항, 상증령 제13조제3항)

-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(상증령 §38⑤,⑥)
-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(상증령 §12조의2①)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③ 외부감사 이행(상증법 §50③)
-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(상증법 §50의2)
-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(상증법 §50조의3, 상증령 §43조의3)
- ⑥ 장부의 작성·비치(상증법 §51, 상증령 §44)
- ⑦ 상증법 §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(상증법 §48③, 상증령 §39)
- ⑧ 상증법 §48⑩에 따른 광고·홍보를 하지 않을 것(상증법 §48⑩, 상증령 §38⑭)

☞ [참고 1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참고

□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 (상증령 제13조제5항, 상증규칙 제4조)



주 체	내 용
① 성실공익법인 ⇒ 주무관청	성실공익법인 확인 관련서류를 주무관청(시·도지사)에 제출 * 제출서류(상증규칙 §4①) 1.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,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.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. 운용소득 사용명세서(별지 제25호의4서식) 4. 이사 등 선임명세서(별지 제26호의2서식) 5.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(별지 제26호의3서식) 6. 전용계좌개설(변경·추가)신고서(별지 제30호서식) 7.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(별지 제31호서식) 8.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2) 9.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5)
② 주무관청 ⇒ 기재부장관	서류를 취합하여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(상반기: 5월말, 하반기: 11월말이내)에 기재부장관에게 송부
③ 기재부장관 결과 통보	기재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, 해당 공익법인 및 국세청에 통보

□ 요건 재확인

-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은 이후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함 (상증령 제13조제5항)

※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신청시 5년간의 확인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
나 의료법인의 정관변경

□ 주요 내용

-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인 시·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(의료법 제48조제3항, 제50조)

□ 정관변경 허가 요건

- (심사기준)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할 것

- ①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되며, 자법인으로 인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사업목적이 타당할 것
- ②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 일 것
- ③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설정할 것
- ④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것
- ⑤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회계 및 지배관계가 명확할 것
 -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 -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,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부과
- ⑥ 자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보유할 것

※ 복지부장관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동일

□ 제출 서류

- 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서류
- ②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

※ 구비서류

- ① 정관변경 이유서
- ② 정관 개정안 (신·구 조문대비표 첨부)
- ③ 정관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
- ④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,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(신·구 대비표 첨부)

③ 자법인 설립계획서 및 임원 이력서

☞ [참고 3] 의료법인 표준정관(안) 참고

- ※ 의료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자법인이 민법(특별법)상 비영리법인일 경우
- 자법인이 의료법인에게 기부금 형태로 이익을 환류토록 정관에 명시 필요

다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(비과세 요건)

□ 주요 내용

-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% 초과시 비과세 취득 가능
(상증법 제48조제2항제2호단서, 상증령 제37조제5항)

※ 상증법상 비과세 요건 : ①~③ 요건 모두를 충족한 법인

- 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것
- ② 「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자산총액 5조원 이상)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③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
- ④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

☞ [참고 2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성실공익법인 비과세요건 참고

□ 허가 요건

-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
 - ①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*되며,
 - 자법인 설립·운영으로 인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사업목적이 타당할 것

※ 정관상 자법인 설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종류 및 자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조항을 명시할 것

☞ 의약품·의료기기 연구개발, 의료관광(숙박업, 외국인환자유치, 여행업, 국제회의업) 및 의료기술 활용분야(장애인보장구 등 맞춤형 제조·개조·수리)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부대사업에 한정

- 의료관광 및 의료기술 활용분야 :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전제로 함 ('14.6.11 입법예고 실시)

②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,

-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 일 것

③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,

-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*의 100분의 30 이내로 설정할 것

* 순자산 :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

④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것

⑤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회계 및 지배관계가 명확할 것

-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
-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, 이사 겸직금지 등을 명시할 것

⑥ 자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보유할 것

- 의료법인은 자법인 회계장부·서류의 열람·등사,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질 것
- 의료법인은 자법인과 관련한 **주요사항***이 변경된 경우,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할 것

* 정관기재사항 중 목적·상호·소재지, 설립요건,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, 자법인의 설립·주식 보유비율

※ 정관변경(시도지사 허가) 및 복지부장관 허가 절차를 동시 진행, 절차 단축

□ 제출 서류

- 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서류
- ②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
- ③ 자법인 설립계획서 및 임원 이력서

☞ [참고 4] 자법인 설립계획서 참고

- ① 설립목적
- ② 의료법인 개요
- ③ 자법인 개요
- ④ 출자내역 (주주현황 및 세부 출자내역)
- ⑤ 사업계획

라 자법인 설립

- (설립 형태)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(특별법)상 비영리법인
- (설립 절차) 상법 또는 민법(특별법)상 설립 절차 준용

< 참고 :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절차 >

1. 모집 설립절차

①발기인의 정관 작성(상법 제288조) → ②주식발행사항 결정(상법 제291조) → ③발기인의 주식일부 인수(상법 제301조) → ④주주모집 및 청약 → ⑤주식에 대한 납입(상법 제305조 및 제307조) → ⑥창립총회 및 임원선임(상법 제308조) → ⑦설립경과 조사(상법 제314조 및 제313조) → ⑧설립등기

2. 발기 설립절차

①발기인의 정관 작성(상법 제288조) → ②주식발행사항 결정(상법 제291조) → ③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(상법 제293조) → ④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 출자 이행(상법 제295조) → ⑤이사, 감사 선임(상법 제296조) → ⑥설립경과 조사, 보고(상법 제299조, 제300조 및 제298조) → ⑦설립등기

3. 주식회사 설립 전 확정할 사항

- 상호, 본점 소재지, 공고 방법
- 1주의 금액, 자본의 총액
- 사업목적(업태/종목 등)
- 임원(발기인) 및 지분율(대표이사, 사내이사, 감사, 임원 아닌 주주, 잔고증명서발급은행 지점명,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)

3 의료법인 지도 감독

□ 지도·감독 (의료법 제51조)

- 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의 지도·감독(시정명령 등)
- 지도·감독(시정명령 등) 불이행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

< 부대사업 외 사업수행 시 단계별 시정명령 >

- (1단계: 당해 행위의 중지) 우선 부대사업 외 당해 사업중지를 명령
- (2단계 : 관련 자산의 처분명령) 사업 중지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운 경우, 부대사업 외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을 명령
 - 자산 매각 명령시 자산의 유통성 정도 등을 고려, 일정 이행기간 부여
- (3단계 : 자법인 주식매각 명령)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관련자산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또는 1, 2단계 명령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운 경우 자법인 주식의 매각을 명령
 - (이행기간) 주식 매각 명령의 경우 주식의 유통성·매각해야 할 주식 금액 등을 고려, 1년 이상의 이행기간을 부여
- (4단계 : 10% 초과 취득 허가의 취소) 주식매각 명령 불이행 시 10% 초과 취득 허가의 취소

□ 경제적 불이익 (상증법 등)

- 복지부장관의 (조건부) 허가 취소로 의료법인이 자법인 주식 10% 초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-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재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
 -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, 기타 세법상 이익환수 등 경제적 제재 수반

Ⅲ. 참고자료

참고 1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성실공익법인 요건

※ 해당 자료는 요약 설명자료이므로 세부내용은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(상증령 §38⑤,⑥)

□ 직접공익목적사업

직접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며,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

□ 출연재산 운용소득

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

□ 운용소득의 사용기준

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·농어촌특별세·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%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

$$* \text{사용기준금액} : (\text{A} - \text{B} + \text{C}) \times 80\%$$

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

(+)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

(-)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

(-) 출연재산 양도차익

(+)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

(+)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(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 소득에 포함됨)

②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·농어촌특별세·주민세 및 이월결손금

③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-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

*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(상증통칙 48-38-3 3호)

*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금액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당해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

② 출연자* 및 그 특수관계인(상증령§12조의2①)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

*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

* '특수관계인'이란 출연자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(1~8)를 말함(상증령§12조의2①)

1.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*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
* 친족: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,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
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*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.

1.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(30% 이상 출자법인)

2.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(50% 이상 출자법인)

3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해당 기업의 임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포함한다]

나. 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
4. 본인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
5.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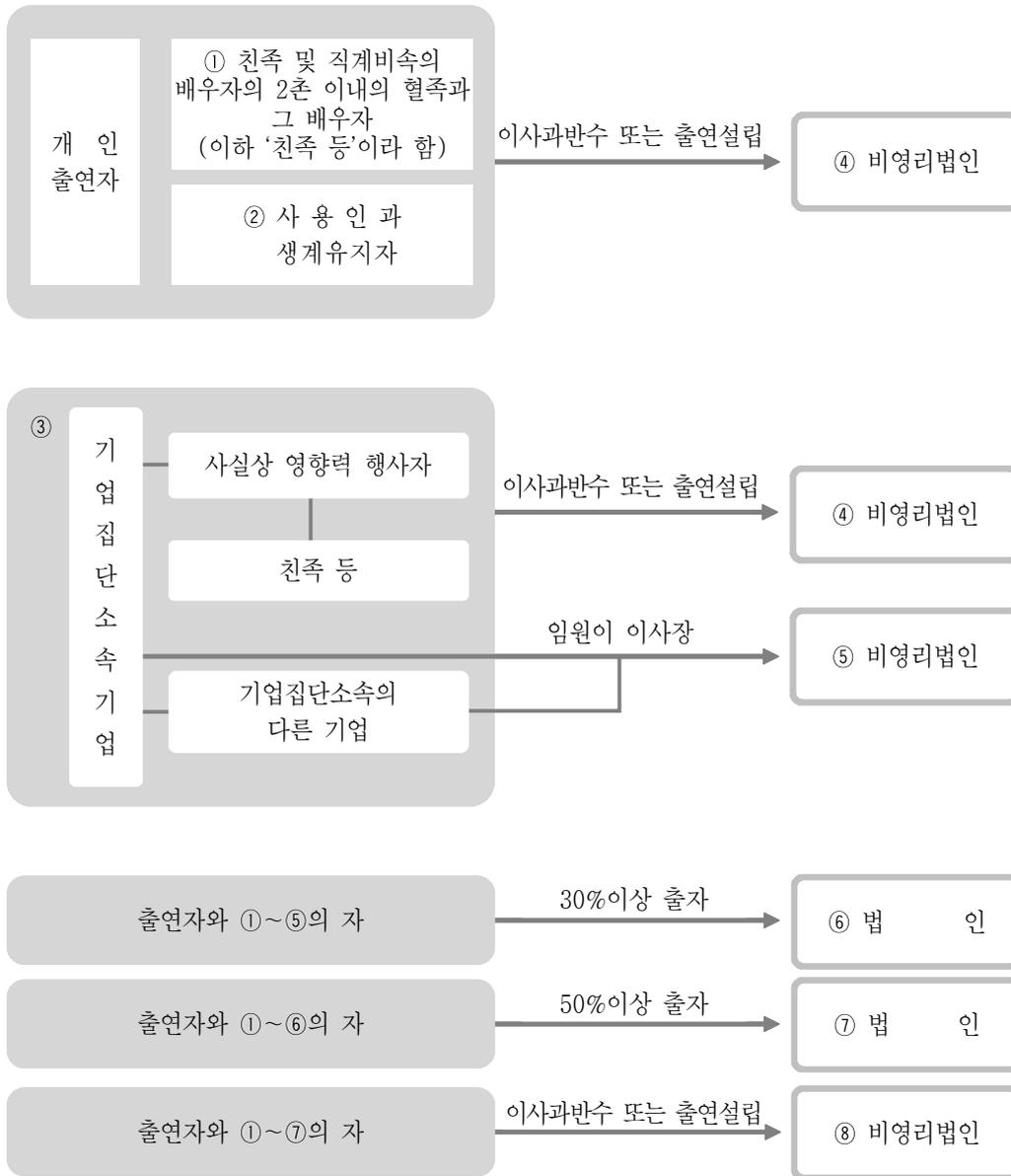
6.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7. 본인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8. 본인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
□ 참고 : 특수관계인의 범위 (상증령 §12의2)

* 출연자와 다음 ① ~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


③ 외부감사 이행 (상증법 §50③)
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

- *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
- *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- *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이행한 경우를 말함(재산-314, '12.9.6)

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(상증법 §50의2)

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*를 사용하여야 함

- * 전용계좌란 i)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ii)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,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음

1.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

- ①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
 -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
 - 수표·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
 - 신용카드, 선불카드,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
- ② 기부금·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
다만,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·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. 이 경우 기부금·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
- ③ 인건비·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
-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·장학금·연구비·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,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
-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,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(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)하는 경우

2. 전용계좌 개설, 변경 및 추가

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(변경·추가)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전용계좌를 변경·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
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(상증법 §50조의3, 상증령 §43조의3)

아래에서 열거하는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

*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중(<http://npointo.hometax.go.kr>)

○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

- ①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(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)
-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
-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·이사·출연자·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
- ④ 주식관련 서류
 -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출연·취득·보유 및 처분사항
 -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
 -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,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
-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
- ⑥ 상증법 §50③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사용현황(2013.2.1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)

⑥ 장부의 작성·비치 (상증법 §51, 상증령 §44)

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함

* 장부의 작성방법 :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종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,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함. 다만, 이종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(세금계산서 포함)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·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·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·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봄

⑦ 상증법 §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(상증법 §48③, 상증령 §39)

□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

<참고> 특수관계인의 범위(상증령§3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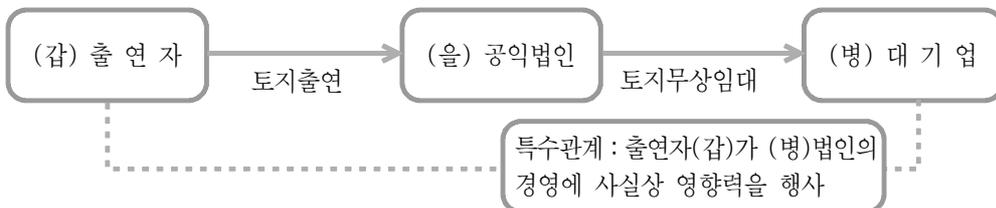
1. 출연자 및 그 친족
2.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
3.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*에 있는 자
 - *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4.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*에 있는 자
5. 출연자의 사용자
6.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
7.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(상증령§12의2③)
8. 출연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기업(임원포함)과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 등
9.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

* 정상적인 대가*(상증령 §31의9 ⑨)

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. 다만,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
1. 부동산 임대용역 : 부동산가액(상증법상 평가액)×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율(2%)
2. 1호 외의 경우 : 법인세법 시행령 §89 ④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
 - * 2013.2.15 이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

<자기 내부거래 예시>



☞ 영리법인(병)의 주주(갑)이 공익법인(을)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

⑧ 상증법 §48⑩에 따른 광고·홍보를 하지 않을 것 (상증법 §48⑩, 상증령 §38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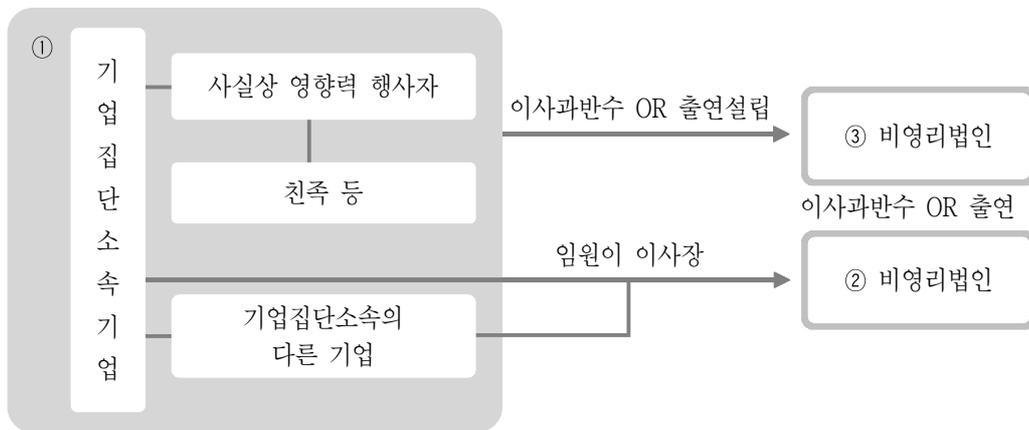
□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·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상증법(제78조제8항)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

○ 가산세 부과대상 광고·홍보의 범위(상증령 §38⑭)

- ① 신문·잡지·텔레비전·라디오·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(다만,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)
- ② 팜플렛·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(다만,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)

□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(상증령 §38⑫)

· 다음 ①~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(당해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)을 말합니다.



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(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

- 가.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
- 나.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
- 다. 나목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

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
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

참고 2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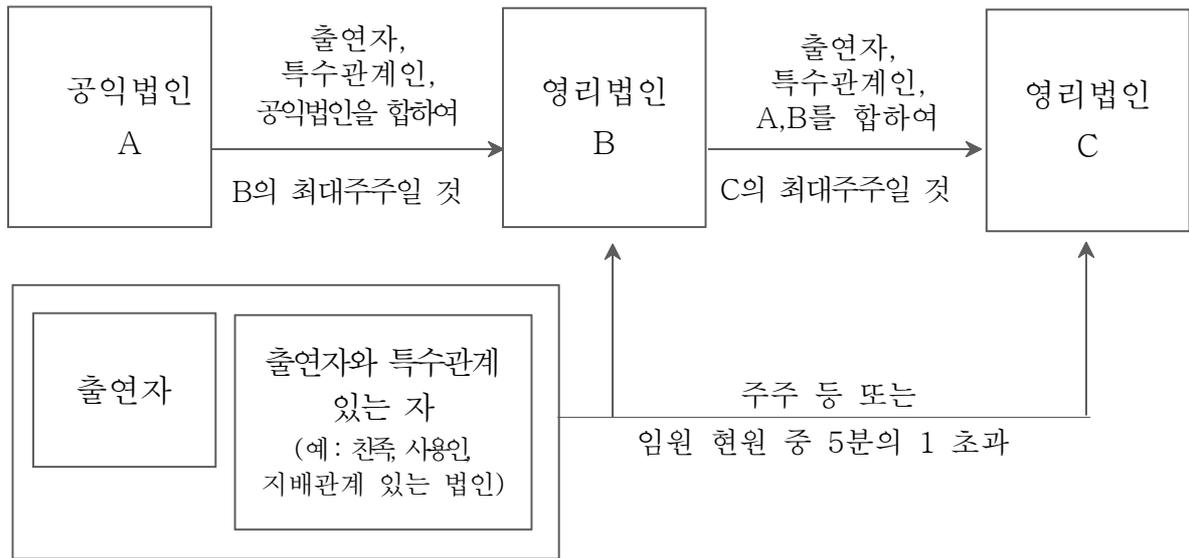
- 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것
- ②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자산총액 5조원 이상)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③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*에 있지 아니할 것

* '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'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(상증령 §13⑦)

1. 출연자(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37조제2항·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)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(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이거나 임원의 현원(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
2.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(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,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{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}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(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)

- ④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'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' 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



○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예외를 인정한 이유 : 공익법인의 출연자(특수관계인 포함)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한도에 예외를 인정

- 예1) 공익법인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
- 예2)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·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乙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% 초과보유하는 경우는 간접지배우려가 없으므로 허용
- 예3) 그러나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·설립한 공익법인이 甲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%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

참고 3

의료법인 표준정관(안)

1. 조문대비표

현행	변경안	비고
<p>제3조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3호의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</u></p>	<p>* 자법인 설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명시</p>
<p>제7조(경비의 지출)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경비의 지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자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</u></p>	
<p>제22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</p>	<p>제22조(이사회 의결사항) 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자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(제9호와 같음)</p>	

<p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자법인 설립</p> <p><u>제26조(자법인의 설립) 이 법인은 제3조 제4호에 의한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법인(이하 이 장에서는 '자법인'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7조(자법인의 설립 계획) 이 법인은 자법인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법인 설립계획서를 수립하여 임원의 이력서와 함께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설립목적</u> <u>2. 의료법인 개요</u> <u>3. 자법인 개요</u> <u>4. 출자내역</u> <u>5. 사업계획</u> <p><u>제28조(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제출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의한 외부감사의 이행을 위해 이 법인의 감사인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법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9조(이사의 겸직금지 등)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자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.</u> <u>② 이 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	<p>* 자법인 설립 관련 별도의 장 신설</p> <p>* 자법인 설립계획서 양식 참조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<p><u>제30조(변경사항보고 등) 이 법인은 자법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관기재사항 중 목적, 상호, 본점 소재지</u> 2. <u>설립 요건</u> 3. <u>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</u> 4. <u>자법인의 설립 및 주식 보유 비율</u> 	
<u>제6장 정관의 변경</u>	<u>제7장</u> -----	
<u>제7장 해산</u>	<u>제8장</u> -----	
<u>제8장 보칙</u>	<u>제9장</u> -----	
<p><u>제31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<u>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</u>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.</u></p>	<p><u>제36조(준용규정) -----의료법,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-----.</u></p>	<p>* 자법인 형태(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)에 따른 준용 규정 명시</p>

2 정관(안)
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의료법인 ○○○의료재단(이하 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료기관의 설치운영
2.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
3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4. 제3호의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

제4조(사무소)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○○시(도) ○○구(군) ○○동(면) ○○리 ○○번지에 둔다.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5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.

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제6조(재산의 관리)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

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(경비의 지출)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재산의 과실
2. 사업수입
3.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
4. 자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
제8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)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0조(회계손익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잉여금으로 충당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(이사장 포함) 5인 이상 15인 이내
4. 감사 2인 이내

제12조(임원의 선임과 해임)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

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한다.

② 이 법인이 이사회에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기)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5조(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)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)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

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는 이사회에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.

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에의 운영과 임직원(이사장 및 이사포함)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9조(대표권 제한)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.

제4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에의 구성 및 구분)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21조(이사회에의 소집 및 절차)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.

1.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
2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
4.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.

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2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7.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
8.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
9. 자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

제23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

제5장 사 업 기 관

제25조(사업기관의 설치)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
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
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.

③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,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
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자법인 설립

제26조(자법인의 설립) 이 법인은 제3조 제4호에 의한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법
인(이하 이 장에서는 '자법인'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27조(자법인의 설립 계획) 이 법인은 자법인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
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법인 설립계획서를 수립하여 임원의 이력서와 함께 시·도지사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설립목적
2. 의료법인 개요
3. 자법인 개요
4. 출자내역
5. 사업계획

제28조(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제출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의한 외부감사의 이
행을 위해 이 법인의 감사인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법인은 지체 없이
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9조(이사의 겸직금지 등)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자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.

② 이 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0조(변경사항보고 등) 이 법인은 자법인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정관기재사항 중 목적, 상호, 본점 소재지
2. 설립 요건
3. 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
4. 자법인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

제7장 정관의 변경

제31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장 해 산

제32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잔여재산의 처분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.

제34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제9장 보 칙

제35조(공고)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○○○도(시)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.

제36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,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제37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기인 회의)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.

제3조(발기인 명단)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1]

기본 재산 목록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 적	평가가액

[별표 2]

설립 발기인 명단

직 위	성 명	성 별	주민등록번호	주 소	날 인

참고 4

자법인 설립계획서

<자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>

자법인 설립계획서

년 월 일

의료법인 :

대표

(인)

요 약 문

1. 설립목적

(정관상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)

2. 의료법인 개요

의료법인명		대 표 자	
		사업자등록번호	
주소(소재지)	(전화 :) (팩스 :)		

3. 자법인 개요

(단위 : 백만원, 명)

자법인 명		대 표 자	
자 본 금			
주소(소재지)	(전화 :) (팩스 :)		

4. 출자 내역

가. 주주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와의 관계	주식수	금액(지분)
합 계				

나. 세부 출자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출자기관	출자유형 (현물/현금/기타)	출자금액(지분)
내부출자			
외부출자			
합계			

5. 사업계획

--

《 목 차 》

I. 자법인 개요	00
1. 설립목적 및 배경	00
2. 의료법인 개요	00
3. 자법인 현황	00
II. 출자 계획	00
1. 자법인 주주현황	00
2.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	00
III. 자법인 운영계획	00
1. 사업내용	00
2. 시장현황 및 전망	00
3. 추진계획	00
IV. 기대 효과	00

I. 자법인 개요

1. 설립 목적 및 배경

2. 의료법인 개요

의료법인 명	대 표 자	
	사업자등록번호	
주소(소재지)	(전화 :) (팩스 :)	

3. 자법인 개요

가. 자법인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자법인 명		대 표 자	
자 본 금			
주소(소재지)	(전화 :) (팩스 :)		

나. 대표자 인적사항

성명(한자)	()	주민등록번호	
주소	(전 화 :) (E-mail :)		
학 력	기간	학교명	전공 학위
	~		
	~		
경 력	기간	근무처명	담당업무 직위
	~		
	~		
기타 특기사항 (자격증, 상벌 등)			

다. 임원 현황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대표자와의 관계	최종학력 (전공·학위)	주요경력

라. 조직 구성

II. 출자 계획

1. 자법인 주주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와의 관계	주식수	금액(지분)
합 계				

2.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

가. 내부출자(의료법인)

(단위 : 백만원, %)

출자기관명	출자유형 (현물/현금/기타)	출자금액(지분)	세부내역

나. 외부출자

(단위 : 백만원, %)

출자기관명	출자유형 (현물/현금/기타)	출자금액(지분)	세부내역
합 계			

Ⅲ. 자법인 운영계획

1. 사업내용

2. 시장현황 및 전망

3. 추진계획

Ⅳ. 기대 효과

IV. Q & A

1. 가이드라인 개요

1

가이드라인이란?

- 가이드라인은 **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**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가이드라인은 **의료법인의 주무관청인 시도지사**에 대하여 자법인 설립을 위한 **정관변경 및 관리감독의 기준**이며,
 - 한편으로는 의료법인이 일정 자법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**비과세 취득을 위한 복지부장관의 허가 및 관리감독의 기준**이라 할 것입니다.
- 이에 따라, **합리적인 수준에서 설립 요건·절차 및 부작용 방지 장치**를 마련하고, 자법인 설립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**남용 방지 장치** 역시 규정하였습니다.

<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>

- ① 의료법인의 자법인 **설립요건과 절차 안내**가 주요내용
- ② **성실공익법인 요건**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주요내용)
- ③ **의료법인의 정관변경** 위한 **주무관청(시도지사) 허가 기준**
- ④ 의료법인의 자법인 **주식 10% 초과 취득** 위한 **복지부장관의 허가 기준**
- ⑤ 의료법인 **지도감독 기준**

- 그간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**정책적으로 규제**하여 왔으며, 그 결과 의료법인이 개설한 **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이 악화**되는 등 **의료연관 산업의 부진을 초래**하여 왔습니다.
 - 이에 2013.12.13. "**4차 투자활성화 대책**"을 통하여,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**보건의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**를 위한 **핵심규제를 적극 완화**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.
 - 결국 의료법인에게도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등 **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제도적으로 뒷받침**하고,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**타 비영리법인과**의 **형평성의 문제를 해결**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
- * 서울대학교병원법인,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 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,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

2. 자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

1

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절차는?

- ① 우선, 의료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**성실공익법인**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**의료법인**이 운용소득의 80%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,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**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**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② 둘째, **의료법인의 정관을 변경**하여야 합니다.
 - 자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**정관을 변경**하거나 자법인 주식취득을 위해 **기본재산을 처분**하려면 주무관청인 **시도지사 허가**가 필요합니다.
- ③ 한편, **일정 주식의 비과세취득**을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**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% 이상 취득시 비과세 취득이** 가능합니다.
- ④ 마지막으로, **상법** 또는 **민법(특별법)상 법인 설립절차**에 따라 **자법인을 설립**함으로써 절차가 종결됩니다.

2

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자격은?

- 의료법인 중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.

3

성실공익법인이란?

-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다음의 요건(①~⑧)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< 상속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>

-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(상증령 §38⑤,⑥)
-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(상증령 §12조의2①)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③ 외부감사 이행(상증법 §50③)
-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(상증법 §50의2)
-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(상증법 §50조의3, 상증령 §43조의3)
- ⑥ 장부의 작성·비치(상증법 §51, 상증령 §44)
- ⑦ 상증법 §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(상증법 §48③, 상증령 §39)
- ⑧ 상증법 §48⑩에 따른 광고·홍보를 하지 않을 것(상증법 §48⑩, 상증령 §38⑭)

-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관련 서류*를 해당 의료법인의 주무관청(시도지사)을 통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 제출 서류 (상증규칙 §4①) >

-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,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
- ②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
-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(별지 제25호의4서식)
-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(별지 제26호의2서식)
-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(별지 제26호의3서식)
- ⑥ 전용계좌개설(변경·추가)신고서(별지 제30호서식)
- ⑦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(별지 제31호서식)
- ⑧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2)
- ⑨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5)

- 또한,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은 이후 5년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.

5

자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?

- 자법인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**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**됩니다.
 - 즉, **의약품.의료기기 연구 개발, 의료관광(숙박업, 외국인환자유치, 여행업, 국제회의업) 및 의료기술 활용 분야(장애인보장구 등 맞춤형제조.개조.수리)**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자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.
 - 다만, 이러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「**의료법 시행규칙**」 **개정**을 전제로 합니다. ('14.6.11 입법예고 실시)
- 또한, **어떠한 경우에도 자법인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**
- 한편, 현행 의료법령에서도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**의료기기 임대 판매업은 제외**되어 있으며, 그 외에도 환자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**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** 등은 「**의료법 시행규칙**」 개정안에서도 **제외**되어 있습니다.
 - 따라서,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처방이나 과도한 검사를 유도하거나 의료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.

6

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남용방지 방안은?

-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「**상속세 및 증여세법**」에 따른 **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**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- 둘째,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의료법령상 부대사업 중 일정 범위로 한정되며, **자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**
- 셋째,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**선순환 구조의 정착**을 위해 자법인으로부터의 수익은 **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**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,
- 넷째, 의료법인의 **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**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**자법인 출자비율은 순자산의 30%로 제한**되며,
- 다섯째,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**부당내부거래 제한, 회계 및 지배관계 명확화** 등 의무가 부여 됩니다.

7

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?

- **현행** 의료법상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에 대한 **시정명령 및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리 감독 권한**이 부여 됩니다.
- 아울러, 사후감독을 위한 **세법상 경제적 제재수단(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, 기타 세법상 이익 환수 등)** 역시 병행 됩니다.

3. 쟁점 사항

1

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인가?

-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며,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더라도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**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습니다.**
 - 또한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으로 재투자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**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.**
- 자법인은 문언 그대로 의료법령상 부대사업 중 일정 범위의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, **의료업 수행 및 건강보험 의무적용과는 연관이 없으므로 의료 민영화로 볼 수 없습니다.**
 -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**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**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
 -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 - 자법인을 허용하여 식당, 의료관광호텔을 운영하는 행위는 현행 건강보험 의무적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

2

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대형병원에게만 이득이고 중소병원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?

□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**중소병원**입니다.

○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 **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2개** 밖에 없습니다.
(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,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)

* 851개 의료법인, 1203개 의료기관 개설 (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*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은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 등이 개설

○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**중소병원인 의료법인의 경영건전성을 제고** 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,

- 결과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능성 있는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3

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,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?

□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,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비율 제한 등 남용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○ 또한, 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중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**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의 80%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**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의료법인의 **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투자 의무가 더욱 강화**되어 있으며 사실상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우려는 없습니다.

-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**지방 중소병원에게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**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,
 - 결과적으로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·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함으로써 **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**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

4

병원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자법인으로 유출하는 것이 아닌가?

-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**자법인 주식보유 비율**에 대해서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의하여 **엄격하게 제한**되어 있습니다.

*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**5% 이상 취득**하기 위해서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**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**하여야 하며, **10% 이상 취득**을 위해서는 **주무장관의 허가 필요**

< 세법상 제한 >

- 의료법인의 경우 타 법인의 **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% 이상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% 초과분**에 대해서는 **상속·증여세 과세**
 -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%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
- *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**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% 이상 재투자**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시 **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**
-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% 이상을 **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, 복지부장관 허가 필요**

- 또한 자법인 설립이 **남용되는 것을 방지**하기 위한 **장치 및 관리 감독방안**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.

- 즉,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**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**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**출자비율 제한, 회계 기준 명확화** 등 남용방지 장치 역시 면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.
- 또한, 의료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시 **의료법령 및 관련 세법에 의한 제재**를 받게 됩니다.

<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 >

- 국내 자법인의 수행가능 사업은 **일정 부대사업으로 제한** (환자진료는 금지)
- **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** 부과
-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**순자산의 30%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**
- 자법인 설립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**부당 내부거래 제한,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할 것**
-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**의료법인 보증금지, 이사의 겸직금지 등 방화벽 설치**

5

병원이 자법인의 제품, 기기 등을 팔기 위해 과도한 검사나 판매 등을 강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?

- **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“의료기기 임대·판매업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.**
 - 또한,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에도 **환자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.**
- 한편, 자법인 설립 허용의 목적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가 아닌 **의료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**하기 위한 것이며, 궁극적으로 **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